

의안번호	제 312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12월 일 (제 344 회)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

발 의 자	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5년 11월 23일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

(윤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2
----------	-----

발의연월일 : 2015년 11월 23일

발의자 : 윤은희, 임희무, 엄재창,
김영주, 연철흠, 최광옥,
이양섭

1. 제정이유

- 건축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정책의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설치·운영과 건축문화 진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정책의 수립 (안 제4조, 제5조)
 - 도지사는 건축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광역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함
- 건축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8조)
- 건축문화의 진흥 (안 제12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기타

(1) 입법예고 : 의견없음(11월 4일 ~ 11월 14일)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른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문화 진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건축정책의 수립

제4조(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도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도지사는 도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내용을 충청북도 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도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도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5.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도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 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1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도 건축기본계획의 반영)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 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정책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 건축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시행·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9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12조(재정지원 및 감독) ①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20조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정산·감독 등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범위에서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 내용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두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건축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제12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8조에 따른 시·도 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군·구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지역건축위원회)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제2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 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3.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5.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6.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7.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1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을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22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정비사업
 3.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건축디자인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기본법시행령

제4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해당 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③ 시범사업 중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광역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하거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충청북도 건축조례

제3조 (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

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3.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4.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에 부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은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 제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사업명 :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2016~2020) 수립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5년
- 내용 :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2016~2020) 수립
- 추진근거 : 건축기본법 제12조

2. 비용발생 요인

-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2016~2020) 수립 용역을 위한 제비용

3. 관련조문

- 건축기본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광역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건축기본법시행령 제4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광역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함

4.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타 시도의 사업비를 고려하여 추계(15개 시도, 최소 100 ~ 최대 613백만원)
- 실제 비용지출은 용역사업의 규모 등으로 상이할 수 있으며, 물가변동과 인상요인은 배제함

나. 추계 결과

- 도 건축기본계획(2016~2020) 수립 용역비 : 7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2015년 1회 추경 예산에 도비 100% 신규 계상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계
계		70,000	0	0	0	70,000
도 건축기본계획수립 용역		70,000	0	0	0	70,000

6. 작성자 : 행정문화위원회 윤은희